

2014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

2014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기업 글로벌진출” 지원사업에 참여 할 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중소기업청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시장지향 제품(서비스)으로 수정·보완,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 협업 등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벤처·창업기업 양성

□ 모집규모 : 80명(업체) 내외, 준입소 모집

지역별 사관학교	선발인원 (예정)	사업장 소재지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40명(업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10명(업체)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10명(업체)	대구, 경북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10명(업체)	부산, 경남, 울산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10명(업체)	충북, 대전, 충남, 세종

-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입소)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주1회 등)
-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별 사관학교에 신청 하여야 함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4년 4월 16일(수) ~ 5월 7일(수) 13:00까지
- (신청방법)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 창업넷 홈페이지-창업사업화-청년창업사관학교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격

- '11~'13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 1 참조)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창업과제의 사업화 수행을 완료한 기업의 대표자
 - * 단,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수행중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을 보유중일 것
 - 신청기업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과 동일성을 유지할 것(붙임 2 참조)

※ 신청이 안되는 자(기업)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②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11~'13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참조]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후 동일한 사업에서 후속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③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④ 지원제한 업종[붙임3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⑤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⑥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지원기관으로부터 후속성과조사 불응,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등

3. 지원내용

□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 총사업비 및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 정부지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7,143만원($=5,000\text{만원}/70\%$)
-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 715만원($=7,143\text{만원} * 10\%$)
-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현물 : 1,428만원($=7,143\text{만원} - 5,000\text{만원} - 715\text{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삭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 주요 지원내용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지향의 제품보완,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 협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벤처·창업기업 양성



- (글로벌 마케팅 교육) 글로벌 시장개척 및 현지 진출 중심 전문교육
 - * 선정된 대표자는 사관학교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글로벌 창업코칭) 창업기업 글로벌 마케팅 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자문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글로벌 시장 지향적 제품보완,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해외 규격·인증 획득 중점 지원

- (수출마케팅 연계) 수출마케팅 상담회, 해외 상품전시회 등 해외 바이어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창업연수,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및 IR 미팅 지원
- (글로벌 협업) 해외 소재 기업, 창업 유관기관 등과 기술협력 및 마케팅 등 협업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 * 예) 기존 제품(서비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해외 기업 및 기관과 R&D·브랜드·생산·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업(Collaboration)을 통한 글로벌 진출
 - * (사례1) A사는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는 B사의 캐릭터를 이용한 전자앱북 출판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VC로부터 투자유치
 - * (사례2) C사는 미국의 세계적인 음향기기 유통사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통하여 제품 인지도 향상 및 전 세계적 유통망 확보

- (투융자 연계)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중진공 투융자복합금융(성장 공유형, 이익공유형) 및 민간 투자금 연계
 - * 투융자 자금 연계지원은 별도 절차를 통해 지원 검토 후 가능
- (네트워크 지원) 상호 기술 교류가 가능한 on-off 교류회 운영

*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 분	사용용도
글로벌 제품보완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글로벌수준의 제품 수정·보완 제작 (양산 목적 제외)
글로벌 진출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창업 교육, 기술·경영 자문비, 글로벌 협업에 따른 비용 등
지재권 취득비	해외 규격·인증, PCT/해외특허 출원 등
수출 마케팅비 (마케팅비)	수출 마케팅 용역비, 전시회 참가비, 항공료, 포장디자인, 해외 임차료 등

□ 사업추진 절차도



4. 선정절차

□ 선정평가

3단계(서류심사-실태조사-면접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창업넷 등)를 통해 게시

- (1단계, 서류심사) 최종 선발인원의 2~4배수 이상 실태조사 및 면접심사 추천
 - 평가기준 : 제품 차별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
- (2단계, 실태조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기준 : 생산기반, 경영성과 등
- (3단계, 면접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 평가기준 : 제품완성도, 글로벌 진출계획 적정성 등
 - * 창업기업 대표자가 발표 원칙, 면접심사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 선정)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
 -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필요시 후보자 포함) 및 사업비 확정

□ 협약

- 최종 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현금)을 납입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종 선정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기간 이내 협약서 또는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최종 선정자 부담금을 납입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거나, 선정 후 신청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협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및 회수 등 조치가능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등의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창업기업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과제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 법인의 경우 협약 당시 대표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
 -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중간 및 졸업평가

- 창업기업의 사업화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
 - 사업수행에 대하여 4등급[우수, 보통, 미흡, 중단(퇴교)]으로 평가
 - * 평가점수 60점미만 또는 결과 하위 10% 내외 시 중단(퇴교) 결정
 - * 중단(퇴교)시 정부지원금 지원 중지 및 기지급된 지원금 회수 조치 가능

- 사업수행 완료 시점에서 창업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추진성과 등에 대한 출입평가 실시
 - 사업수행 최종결과에 대해 3등급[성공(우수), 성공(보통), 실패(퇴교)] 평가
 - * 실패(퇴교)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5.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대표자는 사관학교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신청내용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기업 및 대표자에게 귀속됨

6.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



※ 세부추진 일정 및 절차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창업기업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사업안내

- 창업넷(www.changupnet.go.kr) > [창업사업화] >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sbc.or.kr) > [사관학교 소개]

□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031-490-1161 031-490-13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062-250-303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31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2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041-589-083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중진공 창업기술처 (본사)	02-769-69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붙임 : 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11년~'13년, 지원 대상)
2. 동일성 유지 기준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11년 ~ '13년(지원 대상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창업 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스마트 앱 창작터(창업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청년창업 사관학교

* 상기의 사업수행 후 동일한 사업에서 후속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원 불가

【붙임 2】

동일성 유지 기준

* 신청기업은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에 따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함

구분	항목	세부내용
동일성 적용	법인 및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동일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인정(근거확인) * 현물출자, 양수도계약 등이 없는 신규 법인창업 (개인기업 폐업) → 주관기관의 동일성 확인시 인정
	대표이사	당초지원시 대상자(신청인)이어야 함 * 최대주주이나 대표가 아닌 경우 → 동일성 불인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 동일성 인정
	최대주주	위 대상자(신청인)가 최대주주(경영실권자)이어야 함 * 대표이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동일성 불인정 * 타 주주와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 동일성 인정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 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 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 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 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원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